

포천시체육회 규정

2016.4.20.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경기도체육회의 지회인 포천시체육회 <<(구)경기도체육회의 포천시지부와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회원인 포천시생활체육회가 통합한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② 명칭은 포천시체육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POICHEON-SI SPORTS COUNCIL(약칭 P.S.C)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체육운동을 범시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우리시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포천시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포천시종목단체(이하“종목단체”라 한다) 및 읍 면 동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시 내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3. 경기도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참가 및 경기도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4. 지역 선수·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5. 범시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 프로그램보급

6.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7.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연계를 위한 사업
8. 지역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9. 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0.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 및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종목단체는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산하에 읍·면·동체육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 본회의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써 회원 가입을 확정된 단체를 말한다.
2. “준회원단체”는 본회의 이사회의 의결로써 준회원단체로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본회의 이사회의 의결로써 당해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③ 본회 산하에 읍 면 동체육회를 둘 수 있으며, 읍 면 동체육회는 본회의 지회로 하되 본회의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6조(회비의 납부) 본회는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7조에 따른 회회비를 경기도체육회가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연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종목단체 및 읍 면 동체육회 권리와 의무) 종목단체 및 읍 면 동체육회의 본회에 대

한 권리와 의무는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제8조(포천시체육회의 종목단체 및 읍 면 동체육회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목단체 및 읍 면 동체육회 임직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본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1. 임직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지회의 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 간 업무 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해당 단체의 제규정을 위반한 자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본회는 종목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회의 규정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
2. 본회의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장기간 종목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4. 국제 및 국내 체육기구와의 분쟁
5. 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6.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②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③ 관리단체 중 본회의 정회원단체는 본회의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회가 경기도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⑤ 경기도체육회가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36조에 따라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을 요구한 때에는 본회는 30일 내에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경기도체육회에 보고하고 관리위원회 구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 ① 제5조에 따라 본회의 회원이 되려는 종목단체는 경기도종목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본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본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③ 본회는 경기도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④ 종목단체가 가입한 단체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본회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제명하거나 정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로, 준회원단체는 인정단체로 강등할 수 있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11조(대의원) ① 본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정회원단체의 장
2. 제5조 제3항에 따른 읍 면 동체육회의 장

②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회원단체의 가입, 강등 및 제명
3. 준회원단체의 강등 및 제명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13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8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4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된다.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7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회 임원(사무국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해당 임원은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 즉시 해임된다.
-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장의 임면동의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다.

제19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8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서면결의)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원

제23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9인 이내
3. 이사 20인 이상 60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 본회의 임원은 본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24조(회장의 선출) ①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시장을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인단의 구성, 선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하되,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선거의 중립성) ①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본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본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3. 위원장은 호선하며, 본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임·직원은 회장선거와 종목단체, 읍 면 동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본회, 종목단체 및 읍 면 동체육회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본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체육회가 개선을 지시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회장의 사고 또는 결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결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경기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7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사무국장을 제외한다)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며,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을 둔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부회장 중 1인은 포천교육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③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직 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2. 교육계 인사가 3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3. 여성 임원이 재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생활체육 관계자(선수 출신을 제외한다)가 재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본회의 임원(사무국장을 제외한다)은 경기도체육회의 인준을 얻어 취임한다. 다만, 시장이 회장인 경우, 교육장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⑦ 본회의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시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임원이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위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임원이 본회(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실로 경기도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위가 정지된다.

⑦ 본회의 임원이 본회 운영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위가 정지된다.

⑧ 본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위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회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회장인 경우, 교육장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임원(사무국장을 제외한다)은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38조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 도체육회, 시 도종목단체, 시 군체육회, 시 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4.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 도체육회, 시 도종목단체, 시 군체육회, 시 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 도체육회, 시 도종목단체, 시 군체육회, 시 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5.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 도체육회, 시 도종목단체, 시 군체육회, 시 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

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6.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 도체육회, 시 도종목단체, 시 군체육회, 시 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원종목단체, 시 도체육회, 시 도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 도체육회, 시 도종목단체, 시 군체육회, 시 군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31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때
3. 종목단체 및 본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32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종목단체 및 읍 면 동체육회

제33조(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 본회의 종목단체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4조(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① 종목단체의 임원은 경기도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본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35조(읍 면 동체육회의 조직 및 구성) ① 본회의 지회인 읍 면 동체육회를 둘 수 있다.

② 읍 면 동체육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읍 면 동체육회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읍 면 동체육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읍 면 동체육회의 임원의 인준 및 취소) ① 읍 면 동체육회 임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예외로 한다)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읍 면 동체육회는 학교체육전문가 1인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읍 면 동체육회의 임원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

구로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임원심의위원회) ① 본회는 종목단체 및 읍 면 동체육회 임원에 대한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회장인 경우 협의를 생략한다.

③ 이 밖에 임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의 규정 및 임원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본회 및 종목단체의 제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시장이 회장인 경우 협의를 생략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 도체육회, 시 도종목단체, 시 군체육회, 시 군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2.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 도체육회, 시 도종목단체, 시 군체육회, 시 군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④ 이 밖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 규정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3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가 설치하는 제37조 내지 39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1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2조(재원) 제43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본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

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단체 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7. 기타수입금

제43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4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목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회의 재산은 시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

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 도체육회, 시 도종목단체, 본회 및 종목단체의 임직원
2. 본회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 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 도체육회, 시 도종목단체, 본회 및 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7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회계감사 등) ①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목단체 및 읍 면 동체육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9장 사무국

제49조(사무국) ① 본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 시 결격사유는 제30조의 임원 의 결격사유에 따른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 한다.

⑥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0조(사무국 직제 및 규정 등)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51조(해산) ① 본회는 재적대위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시장의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정한다)로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 의 허가를 얻어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2조(규정의 변경) 본회의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 또는 재적 대위원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 기도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조(규정 제·개정) ① 본회는 경기도체육회 시 군체육회 규정」에 따라 본회의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당해 본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규정 을 제·개정한다.

③ 본회의 인사, 복무, 직제 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개정 시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다만, 직제규정은 경기도체육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회의 규정 및 제 규정(사무국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정의 해석 등) ① 본회의 규정은 읍 면 동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읍 면 동체육회 규정과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읍 면 동체육회가 경기도체육회 규정, 본회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제한사항) 본회가 경기도체육회 규정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7조에서 정한 관리사항을 제한(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각종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6조(경영공시) ①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본회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11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본회는 (구)경기도체육회의 시 군지부인 (구)포천시체육회,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구)포천시생활체육회가 가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구)포천시체육회 및 (구)포천시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본회가 출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구)포천시체육회 및 (구)포천시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본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규정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본회의 회장은 시장이 당연직 회장이 된다.

④ 본회 임원의 임기는 본회가 출범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⑤ 본회의 임원(시장인 회장인 경우, 교육장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및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의 중임 횟수에는 (구)포천시체육회 및 (구)포천시생활체육회의 임원의 중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⑥ 종목단체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구)포천시 경기단체와 (구)포천시 종목별연합회의 임원의 중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⑦ 이 규정 시행 당시 (구)포천시 경기단체(비통합 대상 종목으로 한정한다) 및 (구)포천시 종목별연합회(비통합 대상 종목으로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해 (구)포천시체육회 또는 (구)포천시생활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에서 중임 횟수 제한 허용을 결정한 경우 포천시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구)포천시 경기단체와 (구)포천시 종목별연합회가 통합대상 종목인 경우, 해당 단체의 임원은 (구)포천시체육회 및 (구)포천시생활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한다.

제4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구)포천시체육회와 (구)포천시생활체육회의 직원은 본회의 직원이 된다.